

●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-814호

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 공고

고속도로 일부구간에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됨에 따라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 년 5 월 28 일

국토교통부장관 [인]

①도로의종류	고속국도	②노선명	제1호 경부선 제10호 남해선
③통행료수납자	한국도로공사 사장	④통행료	종전과 같음
⑤시설물의명칭	○ 경부선 - 대왕판교 영업소 ○ 남해선 - 서영암 영업소, 강진무위사 영업소, 장흥 영업소, 보성 영업소, 벌교 영업소, 고흥 영업소, 남순천 영업소, 순천만 영업소		
⑥통행료수납구간	○ 경부선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(양재IC) ~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(대왕판교IC)(7.73km) ○ 남해선 :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은곡리(서영암IC) ~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도룡리(도룡IC)(106.84km)		

⑦통행료납부대상 및 감면대상	o 납부대상 :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이용차량 o 감면대상 :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5호부터 제6호 및 제3항 제1호 마목에 해당하는 차량 중 번호판 인식을 통해 확인된 차량 ※ 경차, 출퇴근차, 설날·추석 전·후·당일 및 국무회의 심의 지정일 면제차 o 기타사항 가)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이용차량에 대한 연계요금 적용 － 시범사업의 구간과 영업체제가 분리되거나 단절되는 구간을 연속하여 이용한 차량 중 영상인식을 통해 확인된 차량 나) 최단거리 요금 적용 1) 대상차량 : 폐쇄식 입구-출구 이용차량 중 영상 오류로 인해 경로가 미구성 된 차량 2) 요금 적용 : 입구 또는 출구기준 가장 가까운 영업소 요금 적용 ※ 단, 고의로 번호판을 훼손하는 등의 영상정보 오류를 발생 시킨 차량, 하이패스 통행방법 위반차량 및 입·출구 정보가 동일한 차량 등은 최장거리 요금 적용
⑧통행료수납방법	o 기존 하이패스 및 TCS 수납방식을 유지하며,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이용차량은 번호판 인식 후 자진납부 기간(15일) 내 납부 또는 신용카드 사전등록납부 ※ 자진납부기간 경과 시 유료도로법 제21조의3 제1항의 ‘내지 아니한 통행료’로 적용함
⑨통행료수납기간	2024 년 5 월 28 일(14:00)부터 2025 년 5 월 27 일(24:00)까지(365일)